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99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김기현·김석기·이주환

이채익 • 권명호 • 지성호

박수영 • 곽상도 • 서병수

김승수 · 이 영 · 태영호

윤두현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적용기한이 2022년 12 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.

그러나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임에 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, 그간의 면세 혜택을 통해 양 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 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 이 「부가가치세법」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 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
1. ~ 20. (생 략)	1. ~ 20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21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
	<u>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